

# 2024년도 산업맞춤형 전문기술인력양성 「연구인력 활용 기술자문」 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

융합혁신지원단 공공연 소속 연구인력의 기술자문을 통하여 소재·부품·장비(이하 소부장) 기업이 겪고 있는 현장의 기술애로를 해결하여 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「연구인력 활용 기술자문」 사업을 수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5월 20일

한국표준협회 회장

## 1. 사업목적

- 「융합혁신지원단\* 공공연」의 우수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자문을 통해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 기업 현장의 기술애로를 해결하여 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

\* 소부장 분야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39개 공공연으로 구성된 협의체(소부장 특별법 제28조)

## 2. 관련법령 및 규정

### 2.1 관련법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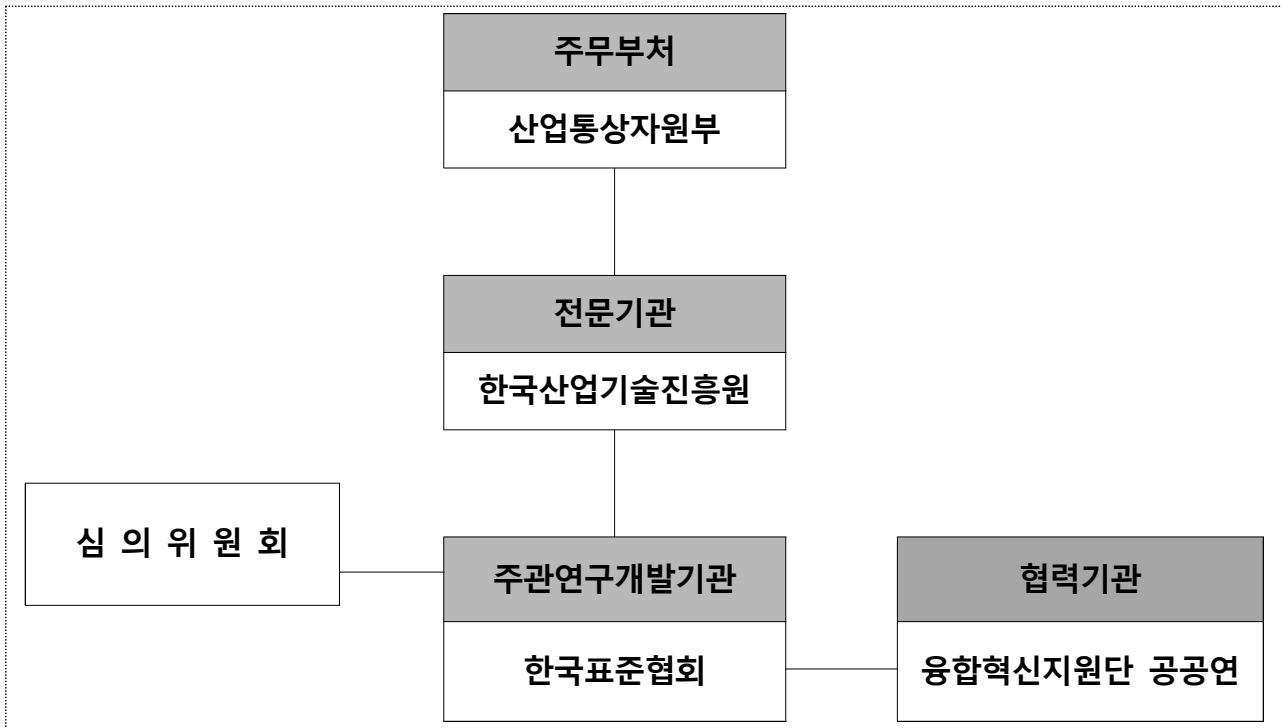
-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2(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),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9조(융합혁신지원단의 지원사업), 제40조(소재·부품·장비 전문기술인력양성)

### 2.2 공통규정

-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,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의 산정, 관리 및 사용, 정산에 관한 요령,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,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·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등

### 3. 사업내용

#### 3.1 추진체계



#### 3.2 지원내용

- (지원대상)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 중소·중견기업
  - \*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」 별표1에 해당하는 기업
  - \* 심의위원회를 통해 소부장 분야 확인 (으뜸기업, 전문기업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로 확인)
  - \* 2021, 2022, 2023년 본 사업에 참여한 기업도 재신청 가능함(총 2회까지 지원가능)
- (지원내용) 디지털 전환, 생산성·품질 향상, R&D 등 기업 현장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공공연 자문인력 매칭 및 기술자문 지원
- (지원인원) 기업당 최대 2명 (공공연 소속 재직자 및 퇴직 후 재고용자)
  - \* 본 사업은 자문 사업으로 사업책임자와 자문인력이 동일부서 소속 가능
- (지원기간) 최소 4개월 ~ 최대 8개월(2025년 2월까지)
  - \* 자문횟수 : 최대 3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1개월 기준 최대 8회까지 자유롭게 일정 수립하여 자문 가능
  - \* 자문기간 및 횟수 등은 심의위원회 승인 및 사업예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  - \* 자문은 현장방문을 원칙으로 하며, 현장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체 자문일수의 20% 이내에서 비대면으로 수행할 수 있음

- (지원규모) 기술자문인력의 인건비성 비용 중 중견기업 50%, 중소기업 67%를 정부지원금으로 지원

- \*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기업 부담금에 대한 부가세는 기업에서 부담함
- \* 자문수당은 공공연구기관별 전문가활용비 지급 규정을 준용하여 책정할 수 있으며, **1MD 기준 최대 60만원까지 지급 가능함**
- \* 자문수당은 공공연구기관별 전문가활용비 규정에 따라 주관기관(한국표준협회)에서 해당 공공연구기관을 통해 지급하거나 개인수당(기타소득) 형태로 자문인력에 직접 지급함 (지급방식은 별도 협의)
- \* 공공연구기관을 통해 자문비용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**총 자문비용의 5%**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관 간접비로 추가 지급 가능함
- \* 자문인력이 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도 본 과제 기술자문 병행 가능함 (단, 본 사업의 자문 일자에 타 정부지원과제 자문 동시 수행 불가)

※ 소재·부품·장비 :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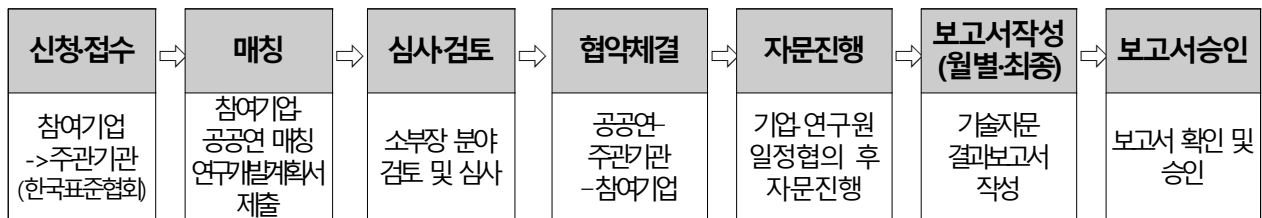
####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한 업종

※ 중견기업 :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

#### 제2조제1호에 근거한 기업

※ 중소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근거한 중소기업

### 3.3 추진절차



## 4. 신청방법

### 4.1 신청기간 : 2024년 6월 7일(금)까지 접수

- \* 1차 접수기한이며, 예산소진 시 신청접수를 조기 마감 할 수 있음
- \*\* 1차 접수완료한 신청 건에 대해 평가협약 이후 잔여 예산이 있을 시, 2차 공고 예정임

### 4.2 신청방법

-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 중소·중견기업이 아래 이메일 주소로 사업 신청서 제출
- 조광래 연구원(Tel : 02-6240-4874 Email : grcho@ksa.or.kr)

## 5. 제출서류

| 구분       | 번호 | 제출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필수<br>서류 | 1  | 기술자문 신청서 (서식1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2  |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3  | 법인등기부등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4  | 최근 3개년도('21~'23)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<br>※ 재무제표의 경우 필히 '표준재무제표증명' 또는 '재무제표 확인' 페이지를 포함하여 제출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5  |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(귀속연월 : '21.12, '22.12, '23.12 세무서 발행본)<br>※ 종사자 수는 각 년도 12월 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명기된 간이세액 인원만 인정 |
|          | 6  |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<br>※ (국세)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, (지방세) 정부2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7  |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 사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해당 시     | 8  | 가산점 획득에 필요한 증빙서류 사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※ 모든 제출서류는 번호순서대로 개별파일로 저장하여 제출(파일명 앞에 반드시 번호 부여)

※ 제출서류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 기관에만 공개할 수 있으며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
## 6. 선정방법

### 6.1 평가방법

- (서면심사) 기업지표(안정성), 적합성 지표(프로젝트 적합성·구체성, 자문인력 활용성·효과성, 기대효과 등), 우대 가산점 등
  - (선정기준) 서면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기업은 선정 가능, 70점 미만인 기업은 선정 제외
    - \* 단, 70점 이상인 기업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선정되어 선정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
    - \* 가산점 별도 부여(최대 4점) ('우대가점' 참조)
    - \* 참여 공공연구기관 확대를 위하여 연구기관별 1개 매칭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선정할 수 있음
- (심의위원회) 서면심사를 실시하며, 선정된 과제 of 지원규모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운영·개최
  - \* 심의위원회를 통해 소부장 분야 확인 (으뜸기업, 전문기업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로 확인)

### 6.2 우대가점 (최대 4점)

- 소재·부품·장비 으뜸기업 (2점) / 소재·부품·장비 전문기업 (2점)

## 7. 유의사항

### 7.1 지원제외

- 소재·부품·장비 산업 분야가 아닌 기업
  -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」 별표1 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
- 신청 기업이 아래의 자격 제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

- 기업의 부도
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- 신청기업, 대표자, 채용인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
-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  - \* 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-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인 기업은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경우  
(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미적용)
  - \* 단,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'BBB'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50% 이상이며,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.
-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
-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정"

## 8. 문의

- 한국표준협회 스마트혁신센터
  - 조광래 연구원(Tel : 02-6240-4874 Email : grcho@ksa.or.kr)
  - 이승찬 위원(Tel : 02-6240-4872 Email : channy@ksa.or.kr)

**별첨**
**융합혁신지원단 소속 공공연구기관**

| 순번 | 기관분류 | 기관명           | 순번              | 기관분류           | 기관명         |  |
|----|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|
| 1  | 기초소재 | 한국화학연구원*      | 24              | 모듈·부품          | 한국자동차연구원*   |  |
| 2  |      |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   | 25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 |  |
| 3  |      | FITI시험연구원     | 26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건설기계부품연구원   |  |
| 4  |      | 다이텍연구원        | 27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대구기계부품연구원   |  |
| 5  |      |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| 28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 |  |
| 6  |      | 한국섬유소재연구원     | 29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|  |
| 7  |      | 한국소재융합연구원     | 30              | 시스템·장비         | 한국기계연구원*    |  |
| 8  |      |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 | 31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한국원자력연구원    |  |
| 9  |      | 한국탄소산업진흥원     | 32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한국전기연구원     |  |
| 10 |      | KATRI시험연구원    | 33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 |  |
| 11 |      | 한국섬유개발연구원     | 34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|  |
| 12 |      | KOTITI시험연구원   | 35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|  |
| 13 | 응용소재 | 한국재료연구원*      | 36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|  |
| 14 |      | 포항산업과학연구원     | 37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|  |
| 15 |      | 한국세라믹기술원      | 38              | 한국나노기술원        |             |  |
| 16 |      |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   | 39              |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|             |  |
| 17 |      | 고등기술연구원       | * 5대 분야 대표 연구기관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|
| 18 | 전자부품 | 한국전자기술연구원*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|
| 19 |      | 한국광기술원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|
| 20 |      |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|
| 21 |      |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|
| 22 |      |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|
| 23 |      | 나노종합기술원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|